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1
----------	-------

발의연월일 : 2021. 11. 3.

발의자 : 조경태 · 윤재갑 · 김용판
안병길 · 이채익 · 태영호
곽상도 · 한무경 · 박성중
서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학습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동시에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풍자적 · 자조적 신조어가 등장하고, 종종 갑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이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 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4 신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를 각각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
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4(생명존중의식 함양)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
<u>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생략)</u>	<u>제17조의5(건전한 성의식 함양) (현행 제17조의4와 같음)</u>
<u>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생략)</u>	<u>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현행 제17조의5와 같음)</u>
<u>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생략)</u>	<u>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현행 제17조의6과 같음)</u>